##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19

발의연월일: 2022. 2. 10.

발 의 자:맹성규·김민기·김정호

한준호・안규백・송옥주

앙이원영 · 김영호 · 강득구

위성곤 • 권인숙 • 소병철

김한정 · 신정훈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 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 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 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법률 제 호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 착한 하역장비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 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②
사항은 <u>「수도권 대기환경개선</u>	
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u>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
기준 등) (생 략)	기준 등)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u>요구할 수 있다.</u>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	전환 촉진 등) ①
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	
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	
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 ② (생략)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해양 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
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u>①</u>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
<u> </u>
 ① 체야스사브자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